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이 2008. 2. 29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관련조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함.
- 나.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함.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관계부처 승인 :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생략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u>지방재정법 제14조</u>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p> <p>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u>지방재정법</u>」 제17조의 규정에</p> <p>-----</p> <p>-----</p> <p>-----</p> <p>-----.</p>
<p>제2조(지원제외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p> <p>1. 법률, <u>지방재정법 제14조</u>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p> <p>2. ~ 3. (생략)</p>	<p>제2조(지원제외대상) -----</p> <p>-----</p> <p>-----</p> <p>-----.</p> <p>1. 법률, 「<u>지방재정법</u>」 제17조 또는 -----</p> <p>2. ~ 3.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